「2027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제35호)

ㅇ 2026.10.15.

ㅇ 행정복지위원회

위 원 장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6. 9. 23. 서초구청장(일자리경제과)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26. 9. 28.

다. 상 정 일 자 : 2026.10.15.

라. 위원회 개최회수 및 일수 : 제353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1회 1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밝은미래국장)

○ 지방재정법 제18조

-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출연에 대한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 의결 요청 사항 :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최충열)

▣ 출연배경 및 취지

○ 우리구는 고금리와 경기침체 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금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 이를 재원으로 특별보증을 통한 금융지원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2027년도에도 10억원을 출연 「2027년 서초구 중소상공인 특별보증 대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본 동의안을 제출한 것임.

○ 서울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 등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금융기관으로부터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으로, 우리구가 재단에 출연하면 해당 출연금을 재원으로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특별보증을 실시하여 금융기관의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고, 이에 따라 본 사업은 담보력 등이 부족하여 일반적인 금융기관 대출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 2027년도에는 서초구 출연금 10억원을 재원으로 100억원 규모의 특별보증을 운영할 계획이며, 이는 구 출연금의 10배수에 해당하는 규모이고, 또한 협약은행의 출연규모에 따라 총 대출규모 및 보증배수가 변동될 수 있도록 하여, 구 출연금과 협약은행의 출연을 연계하여 특별보증을 통한 금융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사업을 계획하고 있음.

○ 아울러 특별보증의 대상은 서초구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대 5천만원까지 보증하고 기보증을 포함하여 업체당 총 1억원 이내에서 지원할 계획으로, 신규보증의 경우 보증비율 100%, 추가보증은

95%를 적용하고, 보증료는 신규보증 연 0.8%, 추가보증 연 1.0%를 적용하며, 대출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정책자금별 상환방법을 적용할 예정이고, 대출금리는 CD(91일) 금리에 0.1% 이내를 더한 수준을 기본으로 하되 정책자금별로 달라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한편,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및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설립·운영되고 있으며, 우리구의 출연금은 재단의 특별보증 재원으로 활용되어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보증을 제공하는 데 사용되는 것으로, 2027년도 특별보증 사업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특별신용보증 사업

○ 사 업 명 : 2027년 서초구 특별보증 대출 지원
○ 보증금액 : 100억원 (출연금의 10배수)
※ 서초구 출연금 10억원의 10배수의 규모로 특별보증 사업 운영
○ 보증대상 : 서초구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
○ 보증한도 : 업체당 최대 5천만원(기보증 포함 1억원 이내)
○ 대출금리 : CD(91일)금리 + 0.1% 이내(*정책자금별 상이)
※ CD(91일)금리 : 3개월 변동금리, 3.2% ('26. 9월 기준)
○ 대출기간 : 5년 이내(정책자금별 상환방법 적용)
○ 보증비율 : 신규보증 100%, 추가보증 95%
○ 보 증 료 : 신규보증 연 0.8%, 추가보증 연 1.0%
○ 대출은행 : 협약은행 지정 지점(총 15개 지점)
* '26년도 기준 협약은행 : 신한, 하나, 국민, 우리, 새마을금고, 카카오뱅크

▣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 제18조[1]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

와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한하여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하고,

○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은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채무에 대한 신용보증을 통하여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조제1항[2]제1호에서 재단의 기본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를 두고 있으며,

○ 또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3]는 구청장이 소상공인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관으

1)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 5. 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 5. 28.>
[전문개정 2011. 8. 4.][제목개정 2014. 5. 28.]

2) **제7조(기본재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3. 기업의 출연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

3) **제6조(특별보증 지원)**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이「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별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특별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에 출연할 수 있고, 융자금에 대한 이자 및 보증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6. 22.>

로부터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에 출연할 수 있으며, 융자금에 대한 이자 및 보증수수료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내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보증 지원 및 이를 위한 재단 출연의 직접적인 자치법규상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

○ 따라서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27년도 출연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 절차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근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특별보증 지원 및 출연 근거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및 조례상 출연의 근거를 두고 있음.

▣ 출연금 현황 등

○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은 서초구와 협약은행이 공동으로 재원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1년부터 2026년까지 총 출연금은 234억원으로, 이 중 서초구 출연금은 114억원, 협약은행 출연금은 120억원으로, 서초구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5억원을 출연한 이후 2021년 29억원, 2022년과 2023년 각각 20억원을 출연하였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매년 10억원을 출연하였음.

○ 특별보증을 통한 대출지원 실적을 보면, 2023년에는 대출규모 704억 8,500만원 중 486억 4,500만원이 지원되어 집행률 69%로 1,109개 업체가 이용하였으며, 2024년에는 대출규모 605억 9,000만원

중 438억 7,700만원이 지원되어 집행률 72.4%로 1,091개 업체가 이용하였으며, 2025년에는 대출규모 579억 6,300만원 중 578억 6,000만원이 지원되어 집행률 99.8%로 1,424개 업체가 이용하였고, 2026년에는 9월 1일 기준 대출규모 462억 5,000만원 중 318억 2,600만원이 지원되어 집행률 68.8%로 643개 업체가 이용한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서울신용보증재단의 2026년 1월부터 9월까지 상담 접수 건수는 총 5,081건으로, 월별 접수 건수는 342건에서 719건 사이로 월평균 접수 건수는 약 564건으로 확인되고 있고, 연도별 출연금 조성 현황과 대출지원 실적 및 상담 접수 현황은 다음과 같음.

출연금 현황 및 대출지원 실적

■ 출연금 현황

○ 출연대상 : 서울신용보증재단

○ 출연금액 : **10억원**

○ 연도별 출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11~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23,400	3,000	3,600	3,000	3,700	3,100	3,300	3,700
서 초 구	11,400	1,500	2,900	2,000	2,000	1,000	1,000	1,000
협약은행	12,000	1,500	700	1,000	1,700	2,100	2,300	2,700

※ 26년 은행 출연내역 : 총 27억(신한 10억, 하나 6억, 우리 4억, 국민 3억, 새마을금고 2억, 카카오뱅크 2억)

■ 연도별 대출 지원 현황 ('26. 9. 1. 기준)

(단위 : 백만원 / 개소)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대출규모	70,485	60,590	57,963	46,250
지원금액	48,645	43,877	57,860	31,826
집행율	69.0%	72.4%	99.8%	68.8%
업체수	1,109	1,091	1,424	643

※ 2026년분 현재 대출 가능액 : 14,424백만원(31.2%)

■ 서울신용보증재단 상담 접수 현황

(단위 : 건)

구 분	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월평균	**564**	709	611	562	719	541	342	539	609	449
일평균	**28.4**	33.7	35.9	26.7	32.6	31.8	16.3	23.4	30.4	24.9

▣ 출연의 필요성

○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전국의 폐업률은 9.77%, 서울시는 9.0%로 나타나고 있으며, 서초구의 폐업률은 8.0%로 전국 및 서울시보다 낮은 수준이나, 폐업자 수는 2023년 10,644명에서 2024년 10,986명, 2025년 11,160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관내 사업자들의 경영환경 역시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그 현황은 아래와 같음.

관내 폐업률 현황

■ 전국·서울시 대비 서초구 폐업률 현황 ('25. 12. 31. 기준)

	전국	서울시	서초구
총 사업자 (명)	10,321,407	2,111,981	138,871
폐업자 수 (명)	1,008,282	190,793	11,160
폐업률 (%)	**9.77**	**9.0**	**8.0**

출처 : 국세청,「국세통계」, 2025, 가동사업자 현황 및 폐업자 현황(시·군·구)

■ 최근 3년 간 서초구 폐업률 현황 ('25. 12. 31. 기준)

	2023	2024	2025
총 사업자 (명)	133,755	135,991	138,871
폐업자 수 (명)	10,644	10,986	11,160
폐업률 (%)	**7.96**	**8.1**	**8.0**
(참고) 신규사업자 수 (명)	14,500	14,225	14,759

출처 : 국세청,「국세통계」, 2025, 가동사업자/폐업자/신규사업자 현황(시·군·구)

○ 특히, 서초구의 경우 최근 3년간 총 사업자 수가 13만 3,755명에서 13만 8,871명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폐업자 수도 1만 644명에서 1만 1,160명으로 증가하고 있어, 사업체의 전체 규모가 확대되는 것과 함께 폐업하는 사업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반면 신규사업자 역시 매년 1만 4천여명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어, 사업자 유입과 폐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가운데 개별 사업자의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 또한 고금리와 내수 부진, 원자재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담보력 등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데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신용보증을 통해 금융 접근성을 보완하는 정책 수단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는바,

○ 이러한 여건에서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특별보증을 제공하고 금융기관 대출을 통한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것은 경영환경 악화에 따른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자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을 보완한다는 점에서 2027년도에도 특별보증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

▣ 출연금 보증사고 및 대위변제 현황

○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사고 및 대위변제 현황을 보면, 보증실행 누계

액은 2024년 434억 7,300만원에서 2025년 930억 9,700만원, 2026년 8월말 기준 1,080억 9,000만원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사고금액도 같은 기간 2억 1,800만원에서 26억 6,700만원, 50억 8,200만원으로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보증실행 누계액 대비 사고율은 2024년 0.5%에서 2025년 2.8%, 2026년 8월말 기준 4.7%로 상승하였고, 대위변제액 역시 1억 3,200만원에서 15억 1,900만원, 29억 5,800만원으로 증가하면서 대위변제율도 0.3%에서 1.6%, 2.7%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그 현황은 아래와 같음.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사고율 및 대위변제율 현황

■ **연도별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사고율 및 대위변제율**

기준연도	보증실행(누계)	사고금액(누계)	대위변제액(누계)
2024. 12. 31.	43,473백만	218백만(0.5%)	132백만(0.3%)
2025. 12. 31.	93,097백만	2,667백만(2.8%)	1,519백만(1.6%)
2026. 08. 31.	108,090백만	5,082백만(4.7%)	2,958백만(2.7%)

○ 특히 2026년 8월말 기준 사고율은 2024년 대비 4.2%p, 대위변제율은 2.4%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보증실행 누계액이 증가하는 가운데 보증사고 및 대위변제 규모도 함께 증가하고 있으며, 사고율과 대위변제율 역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특별보증 확대에 따른 보증위험을 함께 관리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별보증을 통한 자금지원은 매년 상당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2025년에는 집행률이 99.8%에 이르

는 등 실제 보증을 통한 금융지원 수요가 확인되고 있어, 보증사고율 상승만을 이유로 특별보증사업의 필요성을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 아울러 보증실행 누계액의 증가에 비해 사고금액과 대위변제액이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사고율 및 대위변제율 또한 연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출연 및 특별보증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보증지원 규모와 수혜업체 수를 확대하는 데 그치기보다 보증사고 발생 추이와 대위변제 규모, 부실위험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출연의 적정성

○ 법적·제도적 근거

-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과 관내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보증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특히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서 구청장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에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출연은 관련 법령 및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법적·제도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재정투입의 효율성

- 2027년도 출연금은 10억원으로, 이를 재원으로 100억원 규모의 특별보증을 공급할 계획으로 있어, 구 출연금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융지원 효과를 창출하는 구조라 할 것이며, 특히 출연금을 직접 융자하는 방식이 아니라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재원으로 활용하고 협약 금융기관의 대출과 연계함으로써, 제한된 지방재정으로 관내 중·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정투입의 효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 또한 출연금 10억원을 통해 100억원의 보증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는 출연금 자체의 규모를 넘어 민간 금융기관의 자금을 연계하여 지원효과를 확대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재정지출에 비해 재정레버리지 효과가 있는 사업으로 판단되며,

- 다만 출연금의 효율성은 단순히 보증공급 규모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실제 보증 실행실적과 지원업체 수, 출연금 대비 실질적인 금융지원 규모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에도 출연금이 실제 대출로 충분히 연결될 수 있도록 사업 집행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사업 집행성과

- 특별보증사업의 집행실적은 2023년 집행률 69.0%에서 2024년 72.4%로 상승하였고, 2025년에는 99.8%까지 높아지는 등 최근 3년간 전반적으로 집행률이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2025년에는 계획된 보증지원 규모가 사실상 대부분 집행된 것으로 나타나,

사업계획에 따른 집행이 비교적 원활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 2026년의 경우 9월 1일 기준 집행률이 68.8%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연말까지의 집행실적이 반영되지 않은 중간 실적이라는 점에서 전년도와 단순 비교하여 집행성과를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에 따라 2026년의 최종 집행률과 연말까지의 실제 보증 실행 규모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에는 출연금이 계획된 보증공급으로 적기에 연결되고 연도별 편성 규모와 실제 집행실적 간 차이가 최소화되도록 사업 집행을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지역경제적 필요성

- 서초구의 폐업자 수는 2023년 10,644명에서 2024년 10,986명, 2025년 11,160명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5년 폐업률은 8.0%로 전국 9.77% 및 서울시 9.0%보다 낮은 수준이나, 관내에서 폐업하는 사업자의 절대적인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한 금리와 내수부진, 원자재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비용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담보력 등이 부족한 사업자의 경우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이러한 여건에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특별보증은 담보력 등이 부족한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금융기관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금융 접근성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 지역 내 사업자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의 안정적 유지 측면에서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

○ 출연 규모의 적정성

- 2027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10억원으로, 2025년 및 2026년과 동일한 규모이며, 이를 재원으로 100억원 규모의 특별보증을 공급할 계획으로, 최근 3년간 출연금이 매년 10억원으로 유지되어 온 만큼 2027년도 역시 기존 출연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출연 규모의 적정성은 전년도와의 단순한 증감 여부보다는 현재의 사업 규모와 보증지원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 2026년에는 10억원의 출연금으로 125억원, 즉 출연금의 12.5배 규모를 보증하도록 계획하였으나, 2027년에는 동일한 10억원의 출연금에 대해 보증규모를 100억원, 즉 10배로 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출연금 대비 보증공급 규모가 전년보다 20% 축소된 만큼, 2027년도 보증한도가 기존 사업 규모와 비교하여 어느 정도 수준으로 설정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해 보이고,

-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8월 18일부터 「재보증비율 차등화 시행지침」을 시행하여 보증상품과 신청인의 신용등급 등에 따라 재보증비율을 차등 적용하도록 재보증 지원체계를 변경한 바 있으며, 다만, 해당 지침에서 보증배수를 12.5배에서 10배로 직접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2027년 보증규모의 조정이 동 지침에 따른 직접적인 결과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재보증제도 변화에 따른 보증

지원 체계와 위험분담 구조의 변화를 함께 고려하여 볼 필요가 있음.

- 따라서 2027년도 출연금 10억원은 최근 3년간의 출연 수준을 유지하면서 100억원 규모의 특별보증을 공급하는 것으로, 출연금 규모 자체의 급격한 변동은 없으나 전년도에 비해 보증배수가 낮아진 만큼, 향후 실제 보증공급 실적과 사업 여건의 변화를 바탕으로 출연금 및 보증규모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종합의견

○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27년도 출연은 관련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을 보완하고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정책적·법적 추진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특히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여건에서 신용보증을 활용하여 금융 접근성을 보완하는 방식은 지역 내 사업자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또한 그간 특별보증사업이 일정 규모 이상 지속적으로 집행되어 온 가운데, 출연금을 재단의 보증재원으로 활용하고 금융기관의 대출과 연계하는 사업구조를 통해 제한된 지방재정으로 금융지원 효과를 확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 추진의 실효성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다만 보증지원 규모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보증사고 및 대위변제 등 보증위험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만큼, 향후에는 금융지원 규모의 확대와 함께 보증의 건전성과 사후관리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2027년도 출연금은 최근 출연 수준을 유지하는 10억원으로 계획되어 있어 재정 부담이 급격히 확대되는 것은 아니며, 이를 바탕으로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특별보증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사업 취지를 고려할 때 출연의 필요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전년도와 비교하여 보증공급 규모가 조정된 만큼 향후 실제 사업 집행성과와 보증지원 여건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출연 규모와 보증공급 수준이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27년도 10억원의 출연은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을 보완하고 지역경제의 안정적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적 필요성과 사업의 재정적·제도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출연에 동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중·소상공인 대출 지원사업의 집행률이 높고 수요가 많은 상황에서, 2027년도 출연금 10억원을 증액하거나 추경을 통해 추가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

답〉 해당 사업은 2021년부터 추진해 왔으며, 2023년까지는 연간 20억원을 출연하였고, 2024년부터는 매년 10억원을 유지하고 있음. 2027년도에도 10억원을 편성할 경우, 별도의 추경 없이 해당 규모로 운영할 계획임. 서초구는 다른 자치구와 비교해 지원 규모가 3번째로 큰 수준이며, 출연금은 회수되는 금액이 아니라 소진되는 재원이므로 재정 여건과 사업의 효율성을 고려할 때 추

가 출연은 부담이 있음.

질〉 출연금 규모를 10억원으로 유지하더라도 지원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다른 지원 정책을 확대하거나 기존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지 않은지?

답〉 해당 사업은 별도의 담보가 필요하지 않아 소상공인의 선호도가 높고 자금 소진도 빠른편이나, 대체로 연말에 소진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음. 따라서 연말까지 지원한 후 다음 연도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이와 별도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활용한 융자사업과 대출이자 지원사업도 병행하고 있음. 향후 AI특구 등 지역 내 기업 여건을 고려하여 소상공인과 기업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 안내에도 노력할 계획임.

5. 토론자 및 토론요지: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없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10. 체계자구정리내용 : 없음